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4
----------	-----

2024. 4. 2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가. 노후화된 구립 경로당을 신축하여 기존의 경로당과 여가문화센터기능이 함께 이루어지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은곡, 도곡1, 선정 경로당을 어르신복합문화시설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하고자 함.

나. 이에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예산 절약, 운영의 탄력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용이, 이용자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시설 운영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확보
 - 단독 건축물로서 시설 유지·관리의 일관성 및 공공의 안전 확보
 - ※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 분야 안전관리자를 선임
 -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7.) 이후 일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 운영이 필요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시설물 전체 유지 및 관리
- 어르신복합문화시설(시니어센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8조(수탁자의 의무) 관련 사항
-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구분	은곡경로당	도곡1경로당	선정경로당
주소	세곡동 360-18번지	도곡동 950-10번지	역삼동 683-19번지
연면적	636.19㎡	703.8㎡	605.42㎡
준공일	2024년 6월	2024년 10월	2024년 12월
시설유형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시설명칭	은곡시니어센터	도곡1노인복지관	선정시니어센터
용도	할머니·할아버지방 거실(2층) 다목적실 북카페 로비(1층) 프로그래밍실 주방·식당(지하)	주방·식당, 다목적실(4층) 할머니·할아버지방(3층) 체육시설 정보화교육장(2층) 북카페, 다목적실(1층) 프로그램실(지하1) 기계실(지하2)	주방·식당(5층) 할머니·할아버지방(4층) 체력단련실(3층) 정보화교실(2층) 로비(1층) 다목적실(지하1) 기계실(지하2)
사진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

※ 준공 예정 3개소(은곡, 도곡1, 선정) 시설을 동일한 수탁기관으로 공고 및 선정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위치에 동일분야의 여러 시설을 하나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1개소로 볼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어르신 복합문화시설의 설치),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조(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하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1 동의안 세부내용 검토

가.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종전의 노후화된 은곡경로당과 도곡1경로당 및 선정경로당을 철거 후 재건축하고 각각 은곡시니어센터 및 도곡1노인복지관, 선정시니어센터(이하 ‘어르신복합문화시설’)로서 각각 2024년 6월과 10월 및 12월 준공예정에 있는 바, 지난 2023년 5월 제정된 「서울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2)에 의거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1) 「서울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구청장이 위와 같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민간기관인 수탁자에게 위탁하려는 사무의 범위는 ①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 ② 노인의 문화·여가지원 ③ 노인의 교육지원 ④ 노인의 건강증진지원 ⑤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복지증진 사업의 수행이며, 그 밖에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을 포괄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별 시설의 일관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또한 확보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사업 목표가 있다고 보임.

<신축 경로당 시설물 관리>

- ▶ 신축한 경로당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관련 분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7) 이후 건축물의 사용, 내용, 안정성까지 포괄하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의 기준과 일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 운영이 필요함.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주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건물 관리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라고 보여지는 바,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2 동의안에 대한 결론

- 민간위탁사업은 공행정이 맡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게 그 운영을 위탁 함으로써 ① 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의 합리화 도모, ② 공무원의 증원 수요 억제, ③ 대민서비스 향상, ④ 업무의 전문성 확보, ⑤ 행정의 민주화 및 민간 부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지역사회내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였고 지역사회 특성과 욕구 파악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에게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문적 기술을 발휘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1. 신축 경로당 현황

구분	학리경로당	삼성경로당	은곡경로당	도곡1경로당	선정경로당	재너머경로당
행정동	논현2동	삼성1동	세곡동	도곡1동	역삼1동	청담동
연면적 (㎡)	468.75 (▲310.44)	459.88 (▲287.17)	636.19 (▲538.69)	703.8 (▲572.9)	605.42 (▲434.82)	1,148 (▲856.9)
준공	2023.8.22.	2024.6.	2024.6.	2024.10.	2024.12.	2025.12.
유형	노인교실	노인교실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교실
명칭	시니어센터	시니어센터	시니어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센터	시니어센터
운영 방식	민간위탁 (2023.9.11.~2028.9.10)		2024년 민간위탁 예정			2025년 예정

2. 어르신복합문화시설 현황 자료

시설명	소재지	조감도	층별용도
은곡경로당	세곡동 36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185.05㎡) : 할머니·할아버지 방, 거실 - 1층(182.52㎡) : 다목적실, 북카페, 공용 공간 - 지하1층(268.62㎡) : 프로그램실, 주방·식당
도곡1경로당	도곡동 95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층(84.1㎡) : 주방·식당, 다목적실 - 3층(157.59㎡) : 할머니·할아버지 방, 거실 - 2층(155.77㎡) : 체육시설, 정보화교육장 - 1층(117.33㎡) : 북카페, 다목적실 - 지하1층(189.01㎡) : 프로그램실 - 지하2층(52.5㎡) : 기계실
선정경로당	역삼동 68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62.47㎡) : 주방·식당 - 4층(83.81㎡) : 할머니·할아버지 방 - 3층(83.81㎡) : 체력단련실 - 2층(83.81㎡) : 정보화교실 - 1층(131.23㎡) : 로비 - 지하1층(131.23㎡) : 다목적실 - 지하2층(100.37㎡) : 기계실

구분		학리시니어센터(23. 6월 준공)		삼성시니어센터(23. 12월 준공)	
소재지		논현동 109-1		삼성동 100-8	
규모	연면적	468.75㎡		459.88㎡	
	층수	지하2층 ~지상4층		지하2층 ~지상4층	
층별 용도	4층	할아버지방		할아버지방	
	3층	할머니방, 주방		할머니방	
	2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1층	북카페		공용공간	
	지하층	다목적실		주방 및 식당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4
----------	-----

제출년월일 : 2024. 4. 12.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어르신복지과

1. 제안이유

- 가. 노후화된 구립 경로당을 신축하여 기존의 경로당과 여가문화센터기능이 함께 이루어지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은곡, 도곡1, 선정 경로당을 어르신복합문화시설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하고자 함.
- 나. 이에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예산 절약, 운영의 탄력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용이, 이용자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시설 운영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확보
 - 단독 건축물로서 시설 유지·관리의 일관성 및 공공의 안전 확보

- ※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 분야 안전관리자를 선임
-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7) 이후 일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 운영이 필요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시설물 전체 유지 및 관리
- 어르신복합문화시설(시니어센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 및 기능), 제8조(수탁자의 의무) 관련 사항
-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구분	은곡경로당	도곡1경로당	선정경로당
주소	세곡동 360-18번지	도곡동 950-10번지	역삼동 683-19번지
연면적	636.19㎡	703.8㎡	605.42㎡
준공일	2024년 6월	2024년 10월	2024년 12월
시설유형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시설명칭	은곡시니어센터	도곡1노인복지관	선정시니어센터
용도	할머니·할아버지방 거실(2층) 다목적실 북카페, 로비(1층) 프로그램실 주방·식당(지하)	주방·식당, 다목적실(4층) 할머니·할아버지방(3층) 체육시설 정보화교육장(2층) 북카페, 다목적실(1층) 프로그램실(지하1) 기계실(지하2)	주방·식당(5층) 할머니·할아버지방(4층) 체력단련실(3층) 정보화교실(2층) 로비(1층) 다목적실(지하1) 기계실(지하2)
사진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

※ 준공 예정 3개소(은곡, 도곡1, 선정) 시설을 동일한 수탁기관으로 공고 및 선정

3. 참고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위치에 동일 분야의 여러 시설을 하나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1개소로 볼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어르신복합문화 시설의 설치),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조(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하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행정6급 김명비(☎ 02-3423-5906)